C - 84 - 2013

(10) 슬래브의 양쪽에는 안전난간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.

## 9.2 철근 배근 및 조립

- (1) 철근작업 중 철근전도에 따른 전도방지조치(버팀대(줄) 설치)를 하여야 한다.
- (2) 철근에 찔리거나 손상에 주의하고 노출된 철근 및 강선에는 보호캡을 씌우고 위험표시를 하며, 운반시 전도, 비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(3) 근로자들이 철근 조립작업중 바닥 철근에 걸려 전도할 우려가 있어 조립된 철근 상부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가공 철근 인양작업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2줄 걸이로 하며, 달줄·달 포대 또는 인양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.

## 9.3 콘크리트 타설

- (1) 높은 장소에서 콘크리트 타설시 불완전한 행동 등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, 안전모,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3) 콘크리트 타설시 레미콘 차량의 안전 및 교통통제를 위해 차량 통제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.
- (4) 콘크리트 타설방법 및 순서를 준수하여야 하고, 거푸집 전체가 기울어지거 나 변형되어 붕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한곳에 편중 타설하여서는 안된 다.
- (5)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시 전도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- (가) 필요시 지반다짐 실시
  - (나) 충분한 접지면적 확보를 위해 지면에 철판 설치